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03
----------	-------

발의연월일 : 2025. 11. 17.

발 의 자 : 김위상 · 신성범 · 박정하
김선교 · 추경호 · 박충권
김형동 · 김성원 · 이인선
김 건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

23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근로감독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생략) <u><신설></u>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u>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u> 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u>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u>
<u><신설></u>	③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 <u>근로감독관</u> ”이라 한다)은 <u>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u>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u>	④ ----- <u>명예산업안전감독관</u> -----

<u>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u>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 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 니 된다. ③ (생 략)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u>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u> <u>이라 한다)은</u> 이 법 또는 이 법 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 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 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 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 ----- -----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u>근</u> <u>로감독관</u>-----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